



보도시점

2026. 4. 26.(일) 11:00
4. 27.(월) 조간

배포

2026. 4. 24.(금) 16:00

농어촌이 제안하면 기업이 참여한다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용할 농어촌 현장 필요 맞춤형 제안과제 공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변태섭, 이하 ‘협력재단’)과 함께 농어촌 지역의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농어촌 맞춤형 제안과제」 공모를 4월 15일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기업 등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농어촌 지역의 복지 증진, 정주여건 개선, 지역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은 기업이 지정기금 또는 비지정기금으로 출연하면 협력재단이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기업의 참여 및 출연 확대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협력재단이 농어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기업에 제시하여 참여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번 공모는 지방정부 또는 지역의 비영리조직이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는 사업을 직접 제안하면 협력재단이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고, 기업의 출연 수요조사를 병행하여 사업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도 참여 가능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어 출연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전한영 국장은 “이번 전환으로 농어촌상생기금의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과제공모는 5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평가 및 심의를 거쳐 6월 중 지원 과제가 확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www.winwinfun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제안과제 공모 개요

담당 부서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재형 (044-201-1511)
		담당자	사무관	전효주 (044-201-1518)
담당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	책임자	부 장	형준호 (02-368-8951)
		담당자	차 장	이원희 (02-368-8955)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소개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 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17~26.3월말 3,153억원 조성)
- 사업유형으로는 자율추진사업, 본부기획사업, 공모사업 3가지 형태로 운영 중
- * (추진근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 ** (도입배경) 한·중FTA 국회 비준시 여야정 합의('15.11.30.)에 따라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도입('17.3.30.)

- (추진배경) 농어촌상생협력기금 3가지 사업 유형중 자율추진·본부 기획 사업은 출연기관 수요에 의한 것으로 농어촌·농어업 지역의 현실적 의견을 반영한 과제 지원에 한계
 - * 공모과제는 '24년부터 2년간 출연기업 연계없이 12개 과제, 20억원을 비지정기금으로 지원 (('24) 6개 과제, 15억원(3개종료), ('25) 6개 과제, 5억원(1개종료)

- (사업목적) 농어촌·농어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근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관리 규정 제2조제7호 및 운영요령 제2조 제10항

“공모사업”이란 농어업단체, NGO,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안한 사업을 상생기금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심의하여 출연주체의 지정지금과 연계하거나 비지정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내용) FTA특별법 제18조의2 제6항 중 1호~4호 용도 내에서 지역현안 맞춤형 과제, 농산어촌ESG 활성화, 지역소멸 및 고령화 대응 등
 - * 농어촌지역 수혜 여부, 사업결과의 지속가능성(단순 물품, 건축 지원 등 일회적 사업 지양), 사업제안 주체의 노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대상과제 선정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용 용도(FTA특별법 제18조2 제6항)]

- (1호)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 (2호)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3호) 정주여건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 (4호)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협력 사업

- (신청대상) 농어업·농어촌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지방정부 또는 비영리 중간지원조직*
 - * 정부와 지역공동체 중간에서 행정과 지역사회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예시) OO군마을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협·단체 등 비영리법인 등

- (지원규모·기간) 과제별 총사업비는 1억원~5억원 이내로 구성, 1년간 지원
 - * 신청과제별로 지방정부는 총사업비의 50%를 분담, 비영리조직은 총사업비의 30%(인건비 또는 현금)를 분담하도록 사업비 구성